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 . .<br>(제 회) |      |

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 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 | 국무위원 이상민<br>(행정안전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 . .   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을 원활히 보충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 내에서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, 공공의료 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직렬의 정원 전체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기탁물품 접수기관 제한을 폐지하는 등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,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4.00. ~ 5.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제1항제1호 중 “정보·통계”를 “정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물품·물자”를 “물품·자원”으로 한다.

제11조,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법 제12조, 제43조에 따른 심의회와 제4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경우
2.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, 진술, 자문 또는 연구를 한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감사,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심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

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

제16조의3(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관리) ①책임운영기관의 장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,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매년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.

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도정원의 공무원의 종류별·계급별 정원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제16조의4(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)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책임운영

기관에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(이하 “임시정원”이라 한다)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, 1회만 연장할 수 있다.

③ 임시정원의 배정 및 운영 방식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④ 임시정원은 운영기간 종료시 소멸하며, 임시정원 소멸로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17조제3항 단서 중 “해당 계급별 정원 중 의무직렬의 100분의 80과 의무직렬 이외 직렬의 100분의 50을 더한”을 “의무직렬은 의무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, 의무직렬 외의 직렬은 의무직렬 외의 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”으로 한다.

제29조의2제1항 중 “연구형 기관, 문화형 기관, 의료형 기관 또는 시설관리형 기관”을 “기관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2항 전단 중 “불구하고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”를 “불구하고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정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의2(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) ①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(이하 “조사연구형 기관”이라 한다)은 기관의 주된 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| 제1조의2(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각종 <u>정보·통계</u> 에 대한 조사·분석·생산 및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--- <u>정보</u> -----<br>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각종 <u>물품·물자</u> 의 표준화 및 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--- <u>물품·자원</u> -----<br>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~ ⑥ (생   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 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</u><br>① <u>법 제12조, 제43조에 따른 심의회와 제4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.</u><br>1. <u>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경우</u><br>2. <u>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</u> |

<신 설>

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, 진술, 자문 또는 연구를 한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감사,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심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

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

제16조의3(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관리) ①

<신 설>

책임운영기관의 장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,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매년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.

②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도정원의 공무원의 종류별·계급별 정원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제16조의4(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)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또는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

④ 임시정원은 운영기간 종료시 소멸하며, 임시정원 소멸로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17조(임기제공무원의 활용) ①

• ② (현행과 같음)

③ \_\_\_\_\_

\_\_\_\_\_

\_\_\_\_\_

\_\_\_\_\_

\_\_\_\_\_.

\_\_\_\_\_ 의무

계급별 정원 중 의무직렬의 100분의 80과 의무직렬 이외 직렬의 100분의 50을 더한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④ ~ ⑦ (생략)

제29조의2(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)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물품(이하 “기탁물품”이라 한다)을 접수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(이하 “접수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별표 1의 연구형 기관, 문화형 기관, 의료형 기관 또는 시설관리형 기관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한다.

② ~ ⑧ (생략)

제30조(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) ① (생략)  
②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2에도 불구하고 총리령 또는 부

직렬은 의무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, 의무직렬 외의 직렬은 의무직렬 외의 직렬의 계급별 정원의 100분의 50 -----  
-----.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29조의2(기탁물품의 접수기관 및 접수절차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기관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  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 불구하고 -----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u>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</u> 증원<br/>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<br/>증원의 범위, 정원의 규정 방식<br/>및 배정 기준에 관하여는 행정<br/>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 | <p>-----<br/>-----.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| (044) 205 - 2503 |